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
 편집인 : 기획홍보과장
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
 전 화 : 490-3315~9



제1545호 2009. 6. 8.

고 시

제2009-23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유소·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2

※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.

- ▶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: 490-3317 / FAX: 490-3640
- ▶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
- ▶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-3일 18: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

D-3일 접수 →
 D-2일 편집·교정 →
 D-1일 편집·교정 →
 D일 발간

-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,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공 람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


고 시

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2009-23호

서울특별시중랑구 주유소·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요건(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)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유소·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9년 6월 8일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1. 등록절차

주유소·석유대체연료주유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서류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)를 구비하여 중랑구청 민원여권과에 접수하여야 한다.

2. 등록요건

가. 자격기준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이어야 한다.

나. 지역제한

- (1) 주유소·석유대체연료주유소는 다음 시설 등과 주유소의 방화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 - (가) 공동주택 외벽 및 「건축법」에 따라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외벽(동일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를 연결한 2개 이상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), 의료시설(약국 제외), 경로당(노인정)으로부터 25미터이상
 - (나) 어린이놀이터,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
 - (다)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상
- (2) 주유소·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 설치위치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.

- (3) 「건축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소방기본법」, 「주택법」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.

다. 시설기준

- (1)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제15조 및 제36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주유소 등록요건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(2)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 : 1개소(남·여 구분 설치하고 총면적 15제곱미터 이상)이상 설치하고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.

라. 취급유종

- (1)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제13조 및 제3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의 취급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이어야 한다.

3. 제출서류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

4. 등록신청 처리

제출서류가 완비되면 관련공부 및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(부서) 사전협의를 거쳐 처리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된 주유소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.